



## 법원연계형 ADR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조 원 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장

### 1. 서 언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에서의 엄격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폐해를 초래한다. 법원 내에는 민사조정법에 기한 민사조정과 가사소송법에 기한 가사조정 이외에는 이렇다 할 ADR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이 2009년 4월에 서울과 부산에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sup>1)</sup> 법원 내의 조정센터와 같은 사법형 ADR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현재의 소송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많은 행정형 ADR기구의 활용도를 높

이고, 나아가 그 동안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민간형 ADR기구를 만들어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ADR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이로써 법원의 사건 부담이 경감된다면 소송사건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DR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DR기구의 자율적인 운영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철학 내지 마인드가 ADR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하다. 그러나 아직 법원 외부의 ADR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이나 운영

1) 2009. 2. 6. 법률 제9417호로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조정위원이 중전의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면에서 법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법원과 연계한 ADR 기구나 절차를 어떻게 정립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외국의 제도와 운용 실태를 참고하는 한편 그 동안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II. 외국의 제도와 운용 실태

### 1. 미 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국변호사협회(ABA) 등 여러 민간단체의 자생적인 ADR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는데, 소송지연과 과도한 소송비용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자 1983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외의 다양한 절차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한 후로 ADR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입법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 중재,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간이재판(Mini Trial), 간이배심재판(Summary Jury Trial) 등 다양한 형태의 ADR이 시행되었고, 1998년에는 연방ADR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연방ADR법에 의하면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자체의 ADR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ADR 절차를 주재할 중립인(Neutral)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ADR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형 ADR 법인이나 기구가 있고, 온라인 ADR도 발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ADR 기구로부터 독립하여 ADR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 및 변호사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중재인 또는 조정인으로서 업무를 행하는데, 전직 법관이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sup>3)</sup> 변호사들은 조정인으로 선정될 경우 명성이나 평판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정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sup>4)</sup> 그밖에 주민분쟁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sup>5)</sup>가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간 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 가사분쟁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자발적인 이용률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가량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의뢰한 사건이라고 한다.<sup>6)</sup> 미국에서의 조정의 효력은 법률로 주마다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집행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서의 작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는 주도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반드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sup>7)</sup>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이 주법원에 비하여 ADR절차와 재판절차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즉, 연방법원

2) 아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에서도 법원의 업무경감이나 장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법원과의 연관성은 점차 줄어나가는 민간주도형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한다(146면).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 102, 105면.

4) 이준상, 'ADR 제도의 미국 실무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2006년, 453면.

5) 1976년 미국 파운드회의에서 ADR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방정부는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borhood justice center)를 시험적으로 캔사스,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등 3곳에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성공을 거두자 이를 계속 발전시켜 오늘날에는 주민분쟁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로 되었다.

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 105면.

7)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의 조정의 효력', 법조 제573호, 2004년, 42면.

에서는 실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판사는 ADR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전달받을 수 없으나, 주법원의 경우에는 그 구분이 완화되어 있다. 주법원의 경우에는 사건이 많아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sup>8)</sup> 다만,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이후 재판에서 판사가 중립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판사에 의한 평가적인 조정은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요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와 재판절차를 주재자 측면에서 엄격히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정절차와 재판절차가 분리된다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자기가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자유로이 조정에 임하여 조정이 성사되기 쉽다.

## 2. 독 일

독일에서는 1991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변호사화해제도(Anwaltsvergleich)를 도입하여 변호사의 관여하에 성립한 화해에 대하여 집행력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해증서에 당사자들과 함께 변호사들이 서명하고 채무자가 즉시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변호사화해가 성립되면 관할법원 사무국에 화해증서를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sup>9)</sup> 아울러 1999년 12월 ‘법원의 분쟁해결촉진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außergerichtlichen Streitbeilegung)

이 민사소송법시행법(Gesetz, betreffend die Einführung der Zivilprozeßordnung ; EGZPO)의 일부로 제정·공포되어 각 주의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가 1,500DM 이하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 상린관계에 기한 이웃간의 분쟁,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등은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의 시도가 소의 적법요건이 되었다.<sup>10)</sup>

“아직 법원 외부의 ADR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법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3. 일 본

일본에서는 가사사건이나 임대료 증감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소법원이 소송사건을 직권으로 ADR에 회부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법원 외부의 ADR기구에 회부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200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ADR기본법인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에서는 국가에 ADR의 이용 촉진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민간 ADR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형 ADR이나 민간형 ADR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8) 이준상, ‘ADR 제도의 미국 실무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2006년, 453면.

9) 양병희,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변호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417~421면.

10)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의 조정의 효력’, 법조 제573호, 2004년, 45면.

### III. 우리나라에서의 개혁논의

#### 1.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소송사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다양화라는 현실에서 대법원은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2003년 10월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제도적 개혁방안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1년여 동안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ADR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건의문 중 ADR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로서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을 설립할 경우 재판에 비하여 신속·편리·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정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심사에 앞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종류·기능·구성 등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점검·정비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위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이 정확히 분석·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집단적 공공분쟁 등을 예방·조정·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상황을 지

켜보면서 연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분쟁처리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민간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연구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ADR부문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①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의 설립, ②민간형 ADR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③각종 행정형 ADR의 활성화, ④법원부속형 ADR의 기능 제고 등을 선정하여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2월에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책임연구자: 전병서, 이하 ‘사개추위 연구보고서’라고 한다)가 제출되었다. 위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제도와 비교할 때 ADR의 특성 내지 추구하여야 할 가치로 전문성, 경제성, 신속성, 간이성, 유연성,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즉,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되어서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고 확실적인 심리·증거절차에서는 권리침해의 존부, 책임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대체적 분쟁처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료 내지 명목적인 비용만을 징수하는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DR기구의 운영자금을 국가가 부담 내지 보조하여야 하고,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과 비교하여 짧은 반면 개개 분쟁의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밀도는 소송보다 커야 하며, 신청 방식에 있어서도 전화 등에 의한 구술신청을 허용하여 간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재원 내지 민사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첫째, 국가기관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 적정 수의 중재인단으로 구성된 중재원을 설치하여 지방법원장으로 하여금 중재원장을 겸임하게 하고, 중재인단으로 상임중재인과 비상임중재인을 두되, 상임중재인은 퇴임법관이나 변호사 등에서 선임하고, 비상임중재인은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망라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며, 중재인은 개별 중재사건마다 당사자로부터 법정보수를 지급받고, 상임중재인은 그 외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방안, 둘째, 대법원이 관장하는 사단법인 민사중재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각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그 본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각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형태로 중재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민사)중재원의 설립 방안과 관련하여 법원의 업무 경감이나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ADR기구로는 민간형 ADR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sup>11)</sup>

아울러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민간형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호사협회로 하여금 ADR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시철 부장판사는 우선 인적·물적 기반이 비교적 공고한 서울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규칙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민사중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다음 단계적으로 여건이 구비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06년부터 법률구조 및 공익활동 차원에서 270명의 소속 변호사로 중재인단을 구성하여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수소법원 조정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이나 심증형성을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법관 외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실무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 IV. 법원연계형 ADR의 정립 방안

##### 1. 법원연계형 ADR<sup>12)</sup>의 필요성

ADR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정이고, 그 다음이 중재이다. 우리나라 사법형 ADR로는 민사조정법에 근거한 민사조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가사조정이 있을 뿐이고, 행정형 ADR은 대체로 이용도가 높지 않으며, 상설적인 민간형 ADR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빈약하다. 법원내 조정기관으로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수소법원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

11)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146~147면.

12) 앞의 서언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원과 연계된 법원 외부의 ADR이라는 의미이다.

소법원에 의한 조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판기관과 조정기관이 서로 분리·독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이다.<sup>13)</sup> 이제는 수소법원 조정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이나 심증형성을 해온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심증형성은 변론준비절차나 변론기일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절차를 분리하고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법관 외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실무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sup>14)</sup>

민간형 ADR을 활성화하려면 법원에 계속된 소송 사건을 민간형 ADR기구로 회부하는 제도와 운용이 필요하다.<sup>15)</sup> 현재 법원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사건이 소송사건에 비하여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시일 내에 민간형 ADR기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자발적인 이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우선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의뢰받아 이를 토대로 차츰 신뢰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은 각국에 공통된 것으로 많은 나라의 ADR 관련법제는 ADR에의 회부나 ADR 전치주의에 관한 사항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sup>16)</sup> 행정형 AD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원으로서 가능한 한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ADR 프로그

램 중에 법원 내의 ADR뿐만 아니라 법원 외부의 ADR도 포함시켜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sup>17)</sup>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법원이 소송사건을 전면적으로 ADR에 회부하는 것 이외에도 그 중 일부 쟁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ADR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는 특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전문적 ADR기구에 위탁할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다.<sup>18)</sup>

법원이 소송사건을 외부 ADR기구로 회부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의 조정의 경우 비록 민사조정법 등에서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에 회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원 외부의 ADR기구에 회부하기 위해서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 유형 등을 검토해 가는 것이 좋다는 건

13) 미국에서는 당해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조정을 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이준상, 'ADR제도의 미국 실무운영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년, 458면).

- ①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이후 재판에서 판사가 중립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 ②판사에 의한 평가적인 조정은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을 강요당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점
- ③재판업무에 바쁜 판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회적인 시도로 조정에 임하게 되는 점
- ④조정을 주재하는 판사가 장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이면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여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14) 이준상,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법원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10-1권, 2006년, 284면.

15) 사개추위 연구보고서(159면)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6)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69면.

17) 이준상,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법원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10-1권, 2006년, 283면.

18)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177면.

해도 있다.<sup>19)</sup>

## 2. 법원연계형 ADR 및 법원과의 연계방안

### 가. 조 정

#### (1) 새로운 조정기구의 구상

ADR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분쟁의 성격이나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분쟁해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형 ADR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민간형 ADR은 사법형 ADR과 비교하여 불 때 분쟁의 결론 도출이 아닌 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 차별화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정인은 어떠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분쟁의 해결점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20)</sup> 민사조정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정인 등이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분쟁당사자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타협의 정신으로 상호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도 권리와 의무를 너무 따지고 법적인 접근이나 태도를 고집하면 오히려 분쟁해결에 장애가 된다.<sup>21)</sup> 참고로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위원으로는 교수나 행정공무원과 같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두 그룹이 있다.

다양한 민간형 ADR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조정인의 자격, 비밀유지의무, 조정의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등의 문제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ADR 기본법의 입법이 선결과제이다. 다만, 여러 ADR기구의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의 효력, 시효중단, 조정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하여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민간형 ADR을 활성화하려면 법원에 계속된 소송 사건을 민간형 ADR기구로 회부하는 제도와 운영이 필요하다”**

ADR에 관한 기본법<sup>22)</sup>에서 모든 ADR 절차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둔다면 이용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ADR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법원에서 외부 ADR기구에 사건을 회부함에 있어 예상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쟁의 영역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적인 규율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도 절대적

19)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69~170면.

20) 류승훈,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민사소송 제4권, 2001년, 121~122면.

21)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제14집, 421면.

22) 고려대학교의 유병현 교수는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ADR 기본법의 명칭을 '소송 대체 분쟁해결기관의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쓰고 있다(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제22호, 2006년, 295면).

으로 필요하고, 아울러 분쟁의 중국적인 해결기관인 법원과의 연계가 실질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조정인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sup>23)</sup> ADR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우수한 조정인과 중재인들을 확보하는 것이다.<sup>24)</sup> 임시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의하면 일본의 대부분의 법관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임 후에는 봉사 차원에서 민사 또는 가사 조정위원이 되어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퇴한 법관이나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조정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한다면 ADR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행정형 ADR은 많은 경우 중립적인 분쟁해결기구라기보다는 행정부의 민원해결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충분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용 지출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건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민간형 ADR 이외에 행정형 ADR에도 사건을 회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형 ADR 중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여타 행정형 ADR의 경우 그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유형별로 통합하는<sup>25)</sup> 한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 (2) 새로운 조정기구의 예

(가)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구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울러 ‘합의중재’라는 이름으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기도 한다.<sup>26)</sup>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sup>27)</sup>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수적인 업무로 되어 있는 조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상담사건들 중 일부를 조정으로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전국 각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소송업무를 맡지 않는 상임조정위원과 공익활동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비상임 조정위원을 두고, 상담사건들 가운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로서는 공익에 기여한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어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61면.

24) 정진경, ‘미국 법원에서의 ADR 제도의 운영실태’, 무등춘추 제8호, 2004년, 79면.

25) 김상수,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JURIST 제393호, 2003년, 37면.

26) 명칭과는 달리 실제 성격은 조정이나 알선에 해당한다.

27)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두고 있다.

(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민분쟁조정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이웃간 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 등을 다루는 ADR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경우 장래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한정된 사법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분쟁조정센터는 그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 설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sup>28)</sup> 몇몇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으로 급속히 파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라) 2009. 3.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미국의 로스쿨 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의 법과대학과 달리 이론교육은 물론 변호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이를 마치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무능력을 개발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조정과 같은 ADR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DR 강좌는 물론 실제로 ADR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캐나다의 로스쿨 커리큘럼을 보면 ADR 관련 교과목이 매

우 다양하다.<sup>29)</sup>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판사나 변호사 출신의 실무가교수들이 다수 있어 이들의 지도하에 지역주민들 사이의 분쟁이나 특화된 전문분야의 분쟁을 위주로 ADR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ADR에 관심을 갖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거나 그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정률이 높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나 임대차 관련사건의 경우에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 (3) 조정전치주의

법원 외 ADR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9년 소액사건, 상린관계사건, 명예훼손사건 등에 대하여 주의 법률에 따라 조정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시행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차지가가분쟁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정률이 높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나 임대차 관련사건의 경우에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sup>30)</sup> 위와 같은 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가 법원 외 ADR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호사회 등에서 해당 전문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sup>31)</sup> 그리고

28)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제22호, 2006년, 305~306면.

29) 정선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25호, 2008년, 6면.

30)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176면.

31) 참고로,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사법형 조정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조정전치주의는 사법형 ADR에만 인정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사법형 ADR과 민간형 ADR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ADR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sup>32)</sup>

(4) 법원연계형 ADR 절차로의 회부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와 같은 법원 내 조정기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 조정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법원 외부의 ADR 절차에 회부하려면 위와 같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원 외부의 ADR 절차에 회부함에 있어서 법원 내 조정에 회부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외부 ADR 절차에서의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그 근거법률이나 또는 ADR 기본법에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조정법에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는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법관이나 변호사가 주재한 절차에서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법원 외부의 ADR 절차로 회부할

때부터 조정의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규칙에 정하면 될 것이다.

(5) 법원연계형 ADR에서의 조정의 효력

법원이 소송사건을 외부 ADR기구로 회부할 경우 그곳에서 성립된 조정의 효력,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의 종결 여부가 문제로 된다. 현재 행정형 ADR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서 대체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민법상 화해, 즉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의 효력만 인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결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조정서에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조정서에 기초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집행증서를 얻거나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sup>33)</sup> 공증인으로부터 집행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조정조항에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한편,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당해 소송도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당해 소송도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조정조항에 당해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

32)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70면.

33)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의 조정의 효력', 법조 제573호, 2004년, 66~67면.

다.<sup>34)</sup> 상대방이 조정조항에 정해진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DR에서의 합의에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합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소지도 있다. 반면, ADR에서의 합의에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 인정한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ADR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쉽게 집행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첫째로, ADR에 관한 기본법이나 개별 근거 법률 등에서 법관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조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법관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절차를 주재한 경우와 같이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신중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법관이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형 ADR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로, 법률로 집행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손쉽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합의에 흠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기회가 있다. 법률가가 아닌 조정인이 주재한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데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비법률가 전문가들을 조정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DR에 관한 기본 법률이나 여타 근거 법률에 조정인의 자격 및 인가에 관한 조항과 함께 인가를 받은 조정인에 의한 조정에 한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ADR에서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ADR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조정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합의의 진실성, 대리의 적법성, 합의의 합법성(공서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배려하여 굳이 변론절차에 의한 집행판결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요건 심사를 한 후 승인 및 집행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35)</sup> 그렇다 하더라도 심문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 민사소송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주 법무부가 설치 또는 인가한 중재기구에서 체결된 화해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34) 원고가 조정에서의 합의에 반하여 소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소 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소 취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5)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2004년, 168면.

도 법원 외부의 ADR의 효력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나 집행력을 인정한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중재

(1) 법원연계형 ADR로서의 중재의 활용 필요성  
 사법형 ADR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조정 이외에 중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등에서 법원부속형 중재(Court Annexed Arbitration)가 ADR의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한다면 ADR제도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36)</sup> 조정과 달리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일단 중재합의가 있다면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정해진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분쟁은 중재판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절차가 될 수 있다.<sup>37)</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중재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70년 3월 비영리법인 형태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sup>38)</sup> 중재법 제41조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재규칙<sup>39)</sup>을 제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현재 천여 명의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회계사, 변리사 등

의 인사들을 중재인명부에 등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새로운 중재기구

사개추위 연구보고서에서는 (민사)중재원의 설립 방안과 관련하여 법원의 업무 경감이나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ADR기구로는 민간형 ADR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로 하여금 ADR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40)</sup> 우선 중재원을 국가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ADR의 기본 이념이나 발전 방향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 다만, 민간형 ADR기구로 설치하더라도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아울러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재법에 의하더라도 정부는 위 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0조), 위 조항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회에서 중재기구를 만들 경우 중재인단이 변호사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높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각종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36)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22면.

37)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있어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8)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제정· 공포된 무렵 대한상공회의소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0년 3월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기구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39) 당초 명칭은 '상사중재규칙'이었으나, 2000년 4월 '중재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0)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146~147면.

볼 때 이는 커다란 한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3) 중재합의 유도에 의한 중재 회부

법원에서 일반 법관들에게는 생소한 특수한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조기에 분쟁을 확정시킬 필요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합의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물론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재사례들이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처음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재합의를 한 경우이고, 이와는 달리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나, 퇴임한 고위법관들이나 명망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활동한다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것도 없다. 중재사례가 쌓이면서 신뢰를 얻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중재합의를 끌어내기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 (4) 중재의 효력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정한 예외적인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써 다룰 수 있다. 한편, 중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제36조 제2항 소정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여 승인 또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중재법의 규정은 모든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므로 기존의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 국가기관으로든 민간기구로든 별도의 중재원이 설립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차가 번잡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점에서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도록 한 것이 이해 못할 비는 아니다.

**“법원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조기에 분쟁을 확정시킬 필요가 큰 사건의 경우 중재합의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기 타

### (1) ADR 기법들의 결합

다양한 ADR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DR 기법들을 서로 연계하거나 결합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중재와 조정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다.<sup>41)</sup> 중재절차에서 조정을 권유한다든가, 아니면 조정절차에서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합의를 하게 하여 중재절차로 회부한다면 매우 유연하고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변호사화해제도의 도입

41) 사개추위 연구보고서 163~164면.


우리나라는 재판상 화해 이외에 제소전 화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독일의 변호사 화해제도와 같이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신청을 할 필요 없이 양 당사자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조정 등 ADR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변호사화해제도가 도입된다면 변호사들의 합의 노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3) 소송구조와의 결합

행정형 ADR기구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up>42)</sup>에서 특이한 것은 소 제기에 대한 지원인데, 1994년부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여 준다.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판결 확정 뒤에 법정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다. 위와 같은 소 제기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상대방인 사업자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ADR기구

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

### (4) 온라인조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sup>43)</sup>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ecmc.or.kr)의 신청양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쟁조정방법으로 온라인 채팅프로그램과 음성 화상조정시스템이 있어 전자의 경우 비공개대화방을 개설하여 조정관계인으로 하여금 여기에 접속하여 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 화상카메라와 헤드셋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방식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자신의 회사나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45)</sup>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게 온라인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온라인 ADR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분야는 가족법부터 도메인분쟁, 소비자분쟁, 보험분쟁 등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온라인 조정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2) 소비자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구이다.

43)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설치된 ADR기구이다.

44)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분쟁조정을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45) 정영수, '전자법원과 전자ADR', 인터넷법률 제34호, 2006년, 131면.